

## 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조 본 규정은 「지역사회간호학회회칙 제9조(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7-15인내외의 편집위원을 둔다.

제 3 조 위원장은 위원을 추천하여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한다.

1. (자격)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선정기준에 준하여 회장과 차기회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2. (위원 선정기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게재 경험이 있는 자, 국제 전문학술지에 게재 경험이 있는 자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편집 및 심사위원 경험이 있는 자로서 연구윤리관련 징계를 받지 않은 자를 원칙으로 한다.
3. (절차) 전국 간호대학(학과) 교수 중 편집위원 선정기준에 적합한 위원을 학회장이나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후 편집위원장이 심의하여 선정한다. 이후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학회장이 위원을 위촉한다.
4. (임기) 편집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 조 위원회는 지역사회간호학회지(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발간 및 관련 학술자료 등의 간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지역사회간호학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1.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 (1) 편집에 관한 사항
  - (2) 접수된 원고의 심사 및 게재여부의 결정
  - (3) 논문게재료의 결정
2. 학술자료의 발간
  - (1)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간호학회지의 질 관리
  -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평가 준비
  - (2) 대한의편집(KoreaMed) 평가 준비
  - (3) CINAHL 등재유지 및 관리
4. 출판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에서 회부된 사항

## 편집위원회 규정

제 5 조    본 위원회는 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관리한다.

1. (자격) 논문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논문심사위원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서 심사경력이 있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각 연구 분야에 대한 최신지견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2. (정원) 논문 심사위원 수는 영문교정위원을 포함하여 150명 내외로 한다.

3. (절차) 전국 간호대학(학과)교수 중 논문 심사위원 기준에 적합한 위원을 학회장이나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은 후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이후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학회장이 위원을 위촉한다.

4. (임기) 논문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특별 심사위원) 논문의 전문적 심사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편집위원장이 특별 심사위원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6.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을 겸한다.

7. 논문의 심사는 별도의 논문 심사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부터 시행한다.